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24216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구합21898 판결

변 론 종 결 2019. 4. 17.

판 결 선 고 2019.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분 재산세 30,028,870원 및 지방교육세 6,005,780원, 2014년도분 재산세 31,590,240원 및 지방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육세 6,318,050원, 2015년도분 재산세 32,233,750원 및 지방교육세 6,446,750원, 2016년도분 재산세 41,956,020원 및 지방교육세 5,697,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문의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은 [redacted]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같은 법에서 정한 소정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은 [redacted]의료공단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 요건으로서 원고 또는 보훈병원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 정한 소정의 사업 또는 의료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같은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13 내지 16호증, 제1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제3, 4, 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수목이 우거진 임야 상태로 원고나 이 사건 병원이 그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병원은 별도의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고 가파른 경사면 등의 발생으로 환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입이 제한되고 있어 환자들의 휴식이나 재활을 위한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그 사업 내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요양병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취득 목적 및 요양병원의 설립 추진만으로는 현재 원고 또는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 및 의료업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건폐율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단순비율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병원의 건폐율 준수 여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사업 또는 이 사건 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요양병원을 설립하여 현실적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지방세제한특례법상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임수정

판사 오대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1호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6-24

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